마포점자도서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23-56

제출연월일: 2023. 5. 제 출 자: 서울특별시 미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점자도서, 음성도서 등을 개발·보급 하여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마포점자도서실 운영의 위탁사무를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민간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: 마포점자도서실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 - 1) 추진근거
 - 「장애인복지법」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및 제22조 (정보에의 접근)
 - 2) 필요성
 -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문화생활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: 마포점자도서실 운영 및 사업 전반

- 1)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운영
- 2) 도서의 열람·대출 및 자료의 관리
- 3) 점자도서, 음성도서, 전자도서, 점자소식지 등 제작 및 보급
- 4) 관련 도서 등 물품 구매, 물품 및 시설 관리 등
- 5) 자원봉사자, 자원활동가 관리
- 6) 기타 도서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업과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

라. 위탁시설 개요

1) 소 재 지: 마포구 월드컵로 213, 마포장애인복지회관 2층

2) 시설현황

- 건물규모: 지하1층/지상6층(지상 2층 사용)

- 면 적: 127.08 m² (마포점자도서실 시설 전용 면적)

- 층별현황

층별	용도	면적(㎡)	비고
계		1,409.53	
(옥탑)	옥외휴게실, E/V기계실	(50.94)	
6	미교그 CCTV투항 권제세다	212.49	구민
5	마포구 CCTV통합 관제센터	212.49	안전과
4	마포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, 시설관리공단 사무실	212.49	
3	마포구수어통역센터, 농아인쉼터	212.49	
2	마포점자도서실	212.49	
1	주차장, 안내소, 공중화장실	80.51	
B1	기계실, 전기실, 다목적실, 소회의실	266.57	

3) 위치도 및 전경



마. 민간위탁기간: 2023. 7. 30. ~ 2025. 7. 29.(2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 의거 선정(재위탁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(2023년 예산 기준)

1) 소요예산: 104,284천원(개 100%)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000014 01141011	시호네어			
목	세목	2023년 예산액	산 출 내 역		비고	
계		104,284				
민간 이전	민간위탁금	104,284	-인건비 -운영비	77,000 27,284	│ ~ ┃	

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1) 「장애인복지법」제22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
- 2) 마포점자도서실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

자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1)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(서울시) 준수하여 민간위탁 진행
- 2) 추진일정안
 - 마포점자도서실 재위탁 계획 수립: '23. 5월
 - 민간위탁 운영신청서 접수: `23. 5~6월
 -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(선정): `23. 6월
 - 위탁 운영 개시: `23. 7월

3. 참고사항: 관련 법령

「장애인복지법」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제22조(정보에의 접근)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(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, 음성도서,

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·보급하고,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·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·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·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

-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- 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-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.<개정 2021.5.6, 2023.3.9.>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>